



제300회 임시회
2011.05.16.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5월 3일
- 제출일자 : 2011년 5월 4일

3. 제안이유

충청북도 평생교육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도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의 평생교육협의회 관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함.

5. 검토의견

- 본 조례 폐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2007.12.14.)되어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던 “평생교육협의회”를 ‘도지사 소속’의 “도평생교육협의회”로 변경·운영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제정(2011.2.11)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됨.

관계 법령 발췌

□ 평생교육법 [법률 제8676호, 2007.12.14. 전부개정/2008.2.15시행]

- 제12조 (시·도평생교육협의회) ①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도협의회의 의장은 시·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시·도의 부교육감으로 한다.
- ④ 시·도협의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⑤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